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8 2022. 6. 21.(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체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선미 경제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O 창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O 실태조사의 실시 및 위탁(안 제6조)
- O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안 제7조)
- O 사업비 지원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제9조)
- O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유공자 포상(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창업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 대응,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촉진,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창업에 일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업자의 대부분이 창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에 진입하여 창업 시 실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경우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년차 64.6%에서 5년차 31.7%로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창업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3~5년차에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y)'을 극복 해야되기 때문으로 나타남
- 따라서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 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의 전주기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 검토내용

-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라고 예시하고 있음에 따라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함) 제4조의4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산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5에 따른 실태조사, 제4조의7에 따른 기술창업의 활성화 등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창업기업 발굴·성장 지원을 위한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O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2020.01.09.
부 산 광 역 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2019.04.10.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조례	2019.10.10.
인 천 광 역 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2.23.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2020.06.01.
대 전 광 역 시	창업 촉진 조례	2018.08.10.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07.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1.10.
경 기 도	기술기반창업 지원조례	2019.10.01.
강 원 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04.30.
충 청 남 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전 라 북 도	전라북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2020.12.31.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2020.05.21.
경 상 북 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경 상 남 도	기술창업 지원조례	2021.08.05.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2020.10.14.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창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하여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짐

- O 안 제6조는 실태조사의 실시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법 제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실태조사는 창업관련 시책 개발의 기본 자료로서 충북도의 창업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은 조사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7조는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기반창업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창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 및 활성화가 기대됨
-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임
 - 현재 우리 도 내에서는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되고 단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연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창업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창업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보여짐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창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업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내 창업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창업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아직 충북의 창업 생태계는 열악함.

조례를 제정하면서 새롭게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함

- 답변 : 창업기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음

5. 토 론 요 지: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창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창업 관련 현황과 여건 분석
 - 2.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창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창업 인프라의 확충
 - 2.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 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 4.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7.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혁신역량 제고
- 8.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5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창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삭제 <2020. 2. 11.>
- 4의2. 삭제 <2020. 2. 11.>
- 5. 삭제 <2020. 2. 11.>
-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 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2. 6. 29. 시행 예정인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 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중소기업기본법」제 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창업기업 지원 사업 수행

3. 관련조문

- 안 제7조(창업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③ 협력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2027(5년)

○ 비용 기준 : 창업 지원사업 예산기준 작성, 국비 등 포함

나. 추계결과

- 창업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 충북창업스타티움 운영지원 : 60,000천원
 - · 전담인력인건비 30,000천원 × 1명 = 30,000천원
 - · 프로그램운영비 5,000천원 × 4개 프로그램 = 20,000천원
 - · 시설관리비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대응) : 204,000천원(국134,000 도50,000 시군20,000)
-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육성,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지원, 기술기반 창업지원 사업
 - 시니어 기술창업지원(대응): 156,000천원(국136,000 도20,000)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대응): 4,700,000천원(국4,575,000 도105,000 기타20,000)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대응): 2,586,000천원(국2,336,000 되00,000 시군50,000 기타100,000)
 - 혁신창업페스티벌 개최(도비) : 100,000천원×1회

- · 행사장 임대 및 장치비(전시장 부스 설치 등) = 40,000천원
- · 홍보비(홈페이지,광고 등) 및 인쇄비(포스터, 초청장 등) = 20,000천원
- · 일반운영비(회의, 행사추진운영 등) = 40,000천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 창업보육센터운영 : 221,000천원 ※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교부
 - (A등급 16,000천원×3개) + (B등급 14,000천원×5개) + (C등급 12,000천원×4개)
 - + (D등급 11,000천원×3개) + 평가제외 11,000천원×2개) = 221,000천원 (센터 평균 13,000천원)
-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창업유관기관 회의 시 수당(도비) : 130,000원×15명×연3회(안) = 5,850천원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 실태조사
 - 충북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 :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공모사업 : 국비 매칭 도비 대응비 편성
- 창업스타티움 운영, 창업페스티벌, 협력체계 구축, 연구용역 : 도비 100%

(단위: 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40,184,250	8,032,850	8,032,850	8,032,850	8,032,850	8,052,850
창업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1,320,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창업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	37,710,000	7,542,000	7,542,000	7,542,000	7,542,000	7,542,000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1,105,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협력체계 구축 지원	29,250	5,850	5,850	5,850	5,850	5,850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	20,000					20,00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정선미(220-3210)